#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154

발의연월일: 2024. 7. 23.

발 의 자:서삼석·문대림·임호선

이병진 • 박희승 • 정을호

이개호・윤준병・문금주

강득구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여 어선원 등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보험료의 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선원 등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례를 지내기 전에는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어려움에 처한 유족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어선원 등의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실제 장례를 지내는 데 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승선평균임금의 120일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분

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고용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납부고지를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어선원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선원 등의 장례비 선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도모하고 장례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며,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고지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유족이 아닌 자가 어선원 등의 장례를 지낸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 나.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다. 중앙회가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독촉 시에는 독촉일로부터 납부기한까지의 여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함(안 제45조제3항 및 안 제45조제4항·제5항 각각 신설).

#### 법률 제 호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어선에서"를 "그 어선에서"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1항의 장례비를 지급한다"를 "승선평균임금의 120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 제45조제3항 후단 중 "10일"을 "20일"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할 때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통지 및 독촉에 대한 동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회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통지 또는 독촉장이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비 지급의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선원등이 사망(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	3
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	
계 존속ㆍ비속으로서 <u>어선에</u>	<u></u> _
<u>서</u>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u> 어선에서</u>
말한다.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장례비) ① (생 략)	제28조(장례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2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제1항의 장례비를 지급	<u>승선평균임금의 120일</u>
<u>한다</u> .	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u>자에게 지급한다</u> .
<u>&lt;신 설&gt;</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
	원등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

<신 설>

제45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② (생 략)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납부기한은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u>내기 전이</u>	라도	유족	의	청구	·에
따라 해양	수산투	니 장관	0]	정하	<u>는</u>
범위에서	장례비	미의	일부	를	미
리 지급할	수 있	(다. 여	이 경	경우	<u>장</u>
례비를 청구	구할 :	수 있	는	유족	의
순위는 대부	통렁렁	으로	정호	한다	<u>.</u>
<u>④</u> 제3항어	] पि	가 장	례비	副	지
급한 경우	제1호	항에	따른	- 장	·례
<u>비는 제3형</u>	}બો દ	다라	지급	· 한	금
액을 공제	한 니	머지	금	액으	로
한다.					
	_		_		

제45조	:(징	수금의	통지	및	독촉)
1.	2	(현행과	같음)	)	

③
<u>20일</u>

④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할 때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통지 및독촉에 대한 동의 방법・절차

<신 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회가 제4항에 따라 전 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 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에 통지 또는 독촉장이 그 납 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